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91
----------	-----------

제안년월일 : 2018년 11월 26일
제안자 : 오현정 의원

1. 수정이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보다 완성적 성안 및 정관에 모든 사항을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사회서비스원 사업에 속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할 경우 일시에 수요가 집중되는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바, 이를 위해 수정함.

2. 주요내용

- 가. 사회서비스원 재단 정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 나. 재단의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8조)
- 다. 재단의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9조)
- 라.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0조)
- 마. 재단의 직원의 임명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1조)
- 바. 사무 및 사업 위탁 조항의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적용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0조 제2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2.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회계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해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p>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신 설〉	<p>제8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p>

현행	개정안
	<p>감사를 둔다.</p> <p>②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각각 시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p> <p>③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한다.</p> <p>④ 임원의 임명 또는 해임과 임기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p>
〈신설〉	<p>제9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신설〉	<p>제10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p> <p>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p>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p> <p>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사회서비스원에 관리 위탁하거나 사용·대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_____</p> <p>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상 동</p> <p>_____</p> <p>_____.</p>
<p>제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사회서비스원에 파견할 수 있다.</p>	<p>제14조(공무원의 파견) _____</p> <p>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상 동</p> <p>_____</p> <p>_____.</p>
<p>제10조(사무 및 사업의 위탁 등)</p> <p>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② 시는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에 속하는 사업을 위탁할 때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야 한다.</p>	<p>제15조(사무 및 사업의 위탁 등)</p> <p>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 따라 위탁받은 사무 중 <u>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u></p> <p>③ 시는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에 속하는 사업을 위탁할 때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1조(검사·감독) 시는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p>	<p>제16조 (검사·감독)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상 동</p> <p>_____</p>

현 행	개 정 안
<p>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지도·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p>	<p>_____</p> <p>_____ .</p>
<p>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7 (시행규칙) _____</p> <p>_____ 상 _____ 동 _____ .</p>